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FAQ

[현대해상화재보험]

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무엇인가요?

- A.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 피해를 입으실 경우 실손보상하는 보험이며, 정부에서 가입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 1년이 지나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 A. 1년이후 만기가 되어 자동 소멸되는 비갱신형 보험상품으로, 1년후에 자동으로 만기소멸됩니다.

3. 최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보험가입금액은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시설 및 집기에 대하여 최대 7천만원, 재고자산에 대하여 2천만원으로 하며, 건물소유 소상공인은 최대 건물 4천만원, 시설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시에 보상제외되는 금액(사고 자기부담금)은 2십만원입니다. (20만원 미만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최대 한도이내에서 실손보상됩니다.

4. 임차인데 건물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 임차인이신 경우 시설 및 집기(인테리어, 간판 등)와 재고자산만 보상받을 수 있고, 건물은 건물주의 자산이어서 임차인의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건축물대장상 건물 및 수용물건만 보상이 되나요?

- A. 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건물(건축물대장상 건물) 및 수용된 시설 집기 등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건물이나 천막, 비닐하우스 등과 그 내부에 수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에 적치, 설치하여 놓은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6. 동물, 식물, 귀금속, 조각품, 원고/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보상이 되나요?

- A. 아닙니다. 동물 및 식물,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조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원고/설계, 소프트웨어 및 이와 유사한 것, 옥에 쌓아둔 동산은 가입제외 합니다.

7. 건물이 노후되어서 원래 금이나 틈이 있었던 경우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내부 집기 및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되나요?

A. 보상이 안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원래 노후 또는 하자가 있던 건물에서 그 틈이나, 천장, 벽에서 물이 들어와 피해를 입는 경우는 풍수해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건물에서 강풍등으로 건물이 파손되어 수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8.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A. 아니요, 풍수해보험법에서 정하는 8가지 자연재해 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9. 바람, 비, 눈등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되나요?

A. 아니요, 풍수해보험 바람, 비, 눈 등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바람, 비, 눈 등이 들어온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자연 침식활동, 지하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되나요?

A. 자연적인 침식이나 지하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중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특보에 따라 발생한 풍수해 피해(8개)만 보상이 됩니다.